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13
----------	------

제출년월일 : 2023년 10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 시행령 개정('22.7.19.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건축물 미술작품의 철거 근거를 마련하는 등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보완·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철거”를 추가하여 노후화된 작품 또는 안전의 문제가 있는 작품 등에 대해 철거 조치가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함(안 제18조)
- 나. 건축주의 미술작품설치계획서 제출 시기를 “착공신고 시”에서 “착공신고서 제출 이후 180일 이내에”로 변경하여 심의 신청 시기를 구체화함(안 제19조제3항)
- 다.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감정·평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안 제19조제6항)
- 라. 건축물의 설계변경 등으로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하는 금액이 변동될 경우 그 차액을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기금 출연 절차를 보완함(안 제19조2)

- 마. 건축물 미술작품의 다양성 확대를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공모를 통해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함(안 제20조)
- 바.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심의위원은 위촉기간 중 서울특별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참여할 수 없도록 참여 금지 규정을 신설함(안 제2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있음(원안가결)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있음(미반영)

- 개선의견 내용 : 조례안 제8조제1항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시 성별균형을 고려할 것을 제안함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1	제8조(공공미술위원회의 구성) ① 공공미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⑤(생략)	제8조(공공미술위원회의 구성) ① 공공미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⑤(생략)

- 미반영 사유 : 본 개정안은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주요 내용이 미술작품심의위원회와 관련한 내용이기에, 추후 공공미술

관련 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 시 두 위원회에 해당
내용 반영하겠음

(5)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3. 6. 15. ~ 7. 5.) 결과 : 의견있음

- 제출의견

(가) 설치된 미술작품의 이전 또는 변경 시 작가 동의 절차
삭제 요청 : 관련 없음

(나) 경미한 변경 사항 범위 확장(5m→20m) 요청 : 문화체육
관광부 표준조례안과 동일한 범위로 타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 범위 적정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산업담당관 최진영(☎2133-2716)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 중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회피할 수 있다”를 “회피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7조 중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건축물미술작품”을 “건축물 미술작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0조제2항”을 “제20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건축물미술작품”을 “건축물 미술작품”으로, “교체”를 “교체, 철거”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착공신고 시”를 “착공신고서 제출 이후 180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3항과 제4항”으로, “해당 건축주에게 통보하고,”를 “건축주와 구청장에게 통보하고”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을 이전·변경·철거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시장에게 이전·변경·철거 신청을 하여야 하고, 시장은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건축주는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미술작품 변경심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감정·평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작품명 변경

2. 건축물 미술작품의 5m 이내의 위치변경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기금의 출연절차 등) ①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기금을 출연하거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하는 금액과 감정·평가를 거친 금액의 차액을 출연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전에 기금출연계획서를 시장과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통보받거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출연한 건축주가 제출한 기금 출연확인서에 따른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시장은 제1항에 따라”를 “제1항 및 제2항에서 시장이”로 한다.

②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건축주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한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 출자·출연기관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한다”를 “하고,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위촉기간 중에 서울특별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참여할 수 없다”로 한다.

제30조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관리대장”을 “관리총괄표”로 한다.

3.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의 이전·변경·철거 신청 접수 관련 업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공공미술위원회의 구성)</p> <p>①·② (생략)</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p> <p>1.·2. (생략)</p> <p>3. 미술·건축·디자인·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u>공무원</u> “</p> <p>④·⑤ (생략)</p>	<p>제8조(공공미술위원회의 구성)</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 ----- -----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 ----- <u>공무원</u></p> <p>④·⑤ (현행과 같음)</p>
<p>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p> <p>①·② (생략)</p> <p>③ 위원이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u>회피할 수 있다.</u></p>	<p>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u>회피하여야</u> <u>한다.</u></p>
<p>제17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이하 “건축물 미술작품”이라 한다)의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하여 「문화예술진흥</p>	<p>제17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설치) ----- ----- ----- ----- ----- -----</p>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미술작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8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설치하려는 건축물미술작품
 2.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모당선작 선정
 3. 건축물미술작품의 위치변경 및 작품의 교체
- ② (생략)

제19조(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등) ①·② (생략)

③ 건축주는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서 시장에게 미술작품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둔다.

제18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

1. -----
----- 건축물 미술작품
 2. 제20조제3항-----

 3. 건축물 미술작품-----
----- 교체, 철거
-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착공신고서 제출 이후 180일 이내 -----

--.

④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을 이전·변경·철거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시장에게 이전·변경·철거 신청을 하여야 하고, 시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해당 건축주에게 통보하고, 이를 서울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장은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 제3항과 제4항-----
-- 건축주와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

⑥ 건축주는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미술작품 변경심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감정·평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작품명 변경
2. 건축물 미술작품의 5m 이내의 위치변경

제19조의2(기금의 출연절차 등)

①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기금을 출연하거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하는

금액과 감정·평가를 거친 금액의 차액을 출연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전에 기금출연계획서를 시장과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통보받거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출연한 건축주가 제출한 기금출연확인서에 따른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공모를 통한 건축물 미술 작품의 설치) ① (생략)
<신설>

제20조(공모를 통한 건축물 미술 작품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의4 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건축주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한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를 대행할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공모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공모당선작 선정은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다.

제21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1. ~ 4. (생략)

④ (생략)

제3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는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건축허가를 받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 출자·출연기관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시장이 -----

-----.

제21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하고,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위촉기간 중에 서울특별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참여할 수 없다.

1. ~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권한의 위임) -----

-----.

아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그러
하지 아니하다.

1.~2. (생략)

<신설>

3.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대장
작성·비치, 건축물 미술작품
점검, 건축물 미술작품의 철거
· 훼손·분실 시 건축주에 대
한 원상회복 조치 등 사후관리

-----.

1.~2. (현행과 같음)

3.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의
이전·변경·철거 신청 접수
관련 업무

4. ----- 관리총괄표 --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담당관 최진영 (02-2133-2716)